

서울특별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 안 경 위

- 가. 발 의 자: 김기덕 의원
- 나. 의안번호: 제1037호
- 다. 발의일자: 2023. 8. 14.
- 라. 회부일자: 2023. 8. 21.

2. 제 안 사 유

- 환경교육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환경교육 주체를 대상으로 환경교육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실태조사 및 우수 교육사례 등의 홍보·발굴 사항과 표창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.

3. 주 요 내 용

- 가. 환경교육 실태조사 시행 조항 규정(안 제15조).
- 가. 환경교육 정책과 우수사례 홍보 및 표창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16조).

4. 참 고 사 항

- 가. 관계법령: 「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- 나. 기타: 별도 작성내역 없음

5. 검토 의견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교육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관련 실태조사 실시와 우수 교육사례 발굴·홍보 및 표창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 취지나 내용에 대해 별도 의견은 없으며, 환경교육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됨.

<일부개정조례안 신·구조문대비표>

현행	개정안
<신 설>	제15조(실태조사) 시장은 시의 환경교육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환경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<신 설>	제16조(홍보 및 표창) ① 시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교육 정책과 우수 교육사례 및 그 밖에 환경교육 활동을 적극적으로 발굴·홍보하여야 한다. ② 시장은 환경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「서울특별시 표창 조례」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.